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4633호
시행일자 2018. 7. 13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1호(2018.7.12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57호, 2015. 9. 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[주요내용]

○ 청구S/W 검사범위 및 대상에 개인정보 보호기능 추가
○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대한 정기검사·재검사 근거 마련
○ 청구S/W 적정결정 취소절차 및 심사청구 반송절차 명확화
○ 기타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

[시행일]

2018.8.1.

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